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4. 2 선고 2020가단427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피 고 B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1. 4.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12.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12. 31. 접수 제202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전선주

목 록

1. 경남 하동군 D 대 1164.1㎡
2. 경남 하동군 D 지상건물
[도로명주소]경남 하동군 E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1.60㎡. 끝.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소외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C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11095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28. 위 법원에서 “소외 C는 원고에게 6,476,149원 및 그 중 2,427,511원에 대하여 2010.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하였고, 위 결정은 2014. 3. 21.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이행권고결정)

한편,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액은 2020. 12. 21. 현재 5,508,975원(갑 제2호증 지연손해금산출내역)입니다.

2. 사해행위취소

가. 소외 F의 사망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채무자인 소외 C의 ‘부(父)’인 소외 F가 2005. 11. 9. 사망하자 소외 C는 상속인으로서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12. 31. 접수 제20207호로 2015. 11.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사해행위로서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소외 C는 F의 상속인들과의 2015. 12. 31.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자신의 모(母)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는 전체 상속인들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C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한정하여 보면,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소외 C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결과로써 소외 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소외 C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

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갑 제3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일이 2015. 11. 9.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산등기절차상 실제 협의분할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기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등기예규 438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와 소외 C가 2015.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피고와 소외 C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5. 12. 31.이라고 보이므로, 그 실제 협의분할일은 2015. 12. 31.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소외 C의 무자력

소외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며,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만을 감안하더라도 소외 C는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즉,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욱 악화됨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라. 채무자(소외 C) 및 수익자의 악의

- 1) 소외 C는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이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소외 C의 사해의 의사는 인정되며(더욱이,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대법원판례는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2) 피고는 소외 C의 모(母)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C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소외 C가 무자력이 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대법원판례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원상회복(원물반환)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2015. 12. 31.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원래 소외 C의 상속지분인 2/9(소외 F의 상속인으로는 소외 망 F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들을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는 추후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정확히 하기로 하고, 일단 소외 C의 상속분을 2/9라고 가정합니다)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12. 31. 접수 제202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외 C 상속지분 2/9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